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공고 제 2021 - 64호

2022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

「평생교육프로그램」 전문강사 공개모집 재공고

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22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강의하실 우수한 전문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.

□ 공고기간 : 2021. 12. 27(월) ~ 2022. 01. 05(수)
□ 모집(접수)기간 : 2022. 01. 06(목) ~ 2022. 01. 07(금) 18시까지
□ 모집대상(분야) : 교양강좌 , 직업훈련자격증과정, 생활체육과정 강사.
□ 모집방법 : 1차(서류심사), 2차(면접심사).
□ 모집과정 * 신규편성과목 교안제출必
○ 직업훈련 자격증 강좌 및 취미교양(대면교육*정원:코로나19로 변동될수있음)

구분	프로그램	정원	교육일시	장 소	모집인원	비고
주간	초등수학지도사2급자격증	8명	화 오전 10:00-12:00	3층어학교육장	1명	중복가능(주당15시간 초과할수 없음)
	풍물놀이	10명	월수 오전 09:00-11:00	3층 다목적 체육관	1명	
	한식조리사자격증	10명	월수금 오전 10:00-13:00	3층 요리교육장	1명	
	웰빙생활요리	10명	화 오전 10:00-13:00	3층 요리교육장	1명	
	브런치&떡	10명	화 오후 14:00-16:30	3층 요리교육장	1명	
	니하오 중국어(초급)	8명	월,수 오후 13:00-15:00	3층어학교육장	1명	
	니하오 중국어(중급)	8명	화,목 오후 13:00-15:00	3층어학교육장	1명	
야간	*가죽을 활용한 소품제작	10명	수 오후 19:00-21:00	3층공예교육장	1명	
	혼밥족을 위한 건강요리	10명	화 오후 19:00-21:00	3층 요리교육장	1명	

□ 자격기준
○ 해당과정 전공자 및 자격증소지자, 경력 2년 이상
□ 심사방법 : 1차 서류(60%), 2차 면접(40%)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발.
□ 위촉기간 : 2022년 3월-6월(상반기) 9월-12월(하반기) (약 8개월).
□ 구비서류 : 별지서식은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서식다운(내려 받기)하여 사용

서류심사 필수서류	첨부서류
응시원서 1부(별지서식), 이력서 1부(별지서식), 최종학력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1부, 자격증 사본 1부, 경력증명서 1부(원본지참)	자기소개서(별지서식) 1부, 강의계획서 1부씩(상,하반기),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(별지서식) 1부, 수상경력 증명서류 사본 1부(최근 5년 이내 해당자 한함)

※ 구비서류 중 별지서식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증 또는 경력사항은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※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될시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.
※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.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관 시 근로계약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※ 주민등록 등본-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채용기본요건 확인 후 응시자 반환예정
※ 범죄경력조회 동의서(성범죄경력 포함) (최종합격자에 한함) (공통)

□ 접수방법 : 본인 직접 방문접수

□ 접 수 처 :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복지관사무실 (화성시 화산중앙로 16-1)

□ 문 의 처 : 031) 223-1302 / 위촉강사 채용담당자.

□ 서류심사합격자 발표 :2022.01.10(월)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개.

□ 면접일시 : 2022.01.11(화) 14시 예정

□ 강사응시자(신청자) 유의사항

○ 2022년도 위촉강사 채용불가 사유

①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.

② 신체, 정신상의 이상으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.

③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

④ 적격자가 없는 경우

⑤ 수강회원 모집결과 정원의 50%미만인 경우 최종합격 후에도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

○ 2022년도 위촉강사 결격(해촉) 사유

① 수강생 설문 조사시 강사만족도가 현저히 낮을 경우(설문조사외 수강생 출석률, 수료률, 모집률 등 참고)나 강의능력 부족 또는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여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을 야기하여 당해 위촉 기간 내 3회 이상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

② 수강생 출석관리 소홀(허위출석 체크, 대리수강자 방치 등)

③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.

④ 무단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.

⑤ 결강하거나 보강하는 경우 수강생 전원에게 사전 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.

⑥ 강사가 대리 접수한 경우(등록률임의 상승 관련)

○ 위촉 강사급여

①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내부규정에 의함.

② 강사료는 강사 출근부를 기준으로 지급

2021. 12. 27

화 성 시 근 로 자 종 합 복 지 관 장 [직 인 생 략]